



ALLIANCEBERNSTEIN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주요 정책

2021. 5. 20.

얼라이언스번스틴 자산운용(주)(이하 "AB"라고 한다)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 1) 투자자, 그 밖의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의 제 4 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 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 33 조의 2 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 2)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2.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종류

- 1)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 회사의 고유재산 운용업무 부서와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 부서
- 2)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종류

회사의 고유재산 운용업무 부서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 부서
회사의 고유재산에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 단, 상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및 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는 회사의 고유재산에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초기 seeding 목적으로 투자한 경우 제외)

3.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목록 지정 기준

회사는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종목 또는 증권을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판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를 공시 또는 공표
-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4.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 방안

아래는 회사와 고객간, 임직원과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일부 사례를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AB는 아래 열거된 사례 이외의 다양한 상황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실재적 또는 잠재적 이해 상충의 방지·해소를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 다수의 펀드 및 고객 자산 운용
- 업무와 관련하여 선물 및 향응 수령
- 임직원의 개인 투자
- 오류 수정
- 임직원의 대외 활동
-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의결권 행사
- 중개회사 선정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의 파악·평가·관리 및 방지를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임직원은 실제적 혹은 잠재적으로 회사 또는 고객의 이익과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자산 또는 인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임직원이 투자대상회사의 임직원 또는 투자대상회사의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경우 해당회사와 어떠한 형태의 거래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임직원은 회사의 고객인 법인 및 다른 자산운용회사 등의 임직원을 겸임하여서는 아니된다.

- 5) 임직원이 회사와 고객간, 임직원과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6)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7) 임직원이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 거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 펀드와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 8)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제85조 및 제98조에 따라 이해 상충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7 조제 3 항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자본시장법 제 172 조제 1 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자본시장법 제 176 조제 2 항제 1 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 2)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3)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 4)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5) 자신이 운용하는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기 위해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

5.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상기 이외에 회사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관의무 및 고객이익 우선

-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의 이익은 회사,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한다.
- ④ 고객의 이익은 상호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2)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 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삼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인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⑥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